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환경노동위원회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동교육 활성화의 근거법 제정 〉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89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가. 제정안의 제정 취지 및 제정 필요성	3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5
2. 주요 조문별 검토	8
가. 정의 및 노동교육의 기본원칙(제정안 제2조 및 제3조)	8
나. 노동교육위원회 설치 등(제정안 제6조)	11
다. 학교 노동교육(제정안 제6조)	14
라. 사회 및 사업장에서의 노동교육(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	19

마. 노동교육센터 지정 등(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22

바. 노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제정안 제14조) .. 25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5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최근 노동자의 위험 업무 작업 중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 등 노동 문제에 취약한 계층의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경제·법·통일·환경·산림·마약 등 다른 분야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제정·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산업안전 및 노사관계 등 노동관련 교육은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노동교육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별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및 재해 예방 등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을 법률로 정하여 청년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가. 국가는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나.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9조).
- 마.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0조).
-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교육 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I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제정 취지 및 제정 필요성

헌법은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짐을 명시하고, 국가로 하여금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¹⁾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노동기본권 형성을 위한 법률과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자가 준수할 필요가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통해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1)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제정안은 학생, 청소년, 근로자 등 국민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국가 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학교, 사회, 사업장에서 노동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노동관 함양을 유도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등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제정안과 같이 노동교육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경우 노동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될 수 있으며, 「경제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의무를 규정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겠음.²⁾

다만, 사회 각 분야의 전문분야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개별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통해 정부 차원의 고용노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³⁾

2) 개별 분야에 대한 교육의무 관련 입법례는 <참고> 국민 등 대상 의무교육 관련 법률 주요 내용을 참고

3)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별도 입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정책의 보완을 통해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②노동교육 실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차가 존재하므로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③현재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노동교육의 경우 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노사단체, 시민사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노동기본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노동교육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제정안은 모두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5조),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제6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제7조), 학교 노동교육(제9조)·사회 노동교육(제10조)·사업장에서의 노동교육(제11조)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과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교육센터를 지정(제12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정안의 구성체계 >

구 분	내 용
제1조 (목적)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하는 데 기여
제2조 (정의)	노동교육 : ①「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 ②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③그 밖에 노동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
제3조 (노동교육의 기본원칙)	노동교육은 ①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 ②노동에 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 ③노동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름
제5조 (책무)	국가는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청소년, 여성, 외국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사항 포함 학교의 장은 노동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제6조 (노동교육위원회 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 설치 - 위원장 : 고용노동부장관 - 당연직 :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위촉직 : 노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노동교육 기본계획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제8조 (노동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
제9조 (학교 노동교육)	고용노동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
제10조 (사회 노동교육)	고용노동부장관·지자체장은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등 사회 노동교육 진흥 사업 추진
제11조 (사업장에서의 노동교육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제12조 (노동교육센터의 지정 등)	국가·지자체 소속 교육 연구기관 등으로서 교육기능 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을 노동교육센터로 지정
제13조 (지정의 취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노동교육센터 지정 취소

구 분	내 용
제14조 (노동교육프로그램 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노동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
제15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노동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제16조 (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노동교육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음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 및 노동교육의 기본원칙(제정안 제2조 및 제3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노동교육”을 ①「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 전반, ②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헌장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③그 밖에 노동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노동교육은 ①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하고, ②노동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③노동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노동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 정 안
제2조(정의) “노동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 전반 2.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헌장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3. 그 밖에 노동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제3조(노동교육의 기본원칙) ① 노동교육은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 ② 노동교육은 노동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③ 노동교육은 노동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현재 노동문제에 관한 이념 대립과 이로 인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으로, 노동교육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차가 존재하는 상황임. 일례로, 2022년 개정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노동교육과 관련한 사항으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도 있는바,⁴⁾ 노동교육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⁵⁾

제정안은 정의조항을 통해 “노동교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내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활동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현행 법률과 국제규범의 내용으로 노동교육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동교육의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노동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제3조에는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의 장려, 노동교육의 체계적·지속적 추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로 노동교육의 중립성과 관련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4) 한국일보, ““교육과정에 노동 교육 넣어야” 주장에 난입한 보수단체 회원...공청회 파행”, 2022.10.9.

5) 조선에듀, “학교 노동교육 의무화?... ‘편향성 우려’ 팽배”, 2021.4.13.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⁶⁾고 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특정 분야에 대한 국가의 교육사업 등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경제교육지원법」 및 「통일교육 지원법」은 경제교육과 통일교육이 특정의 이익이나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함을 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입법례를 참고하여 제정안의 기본원칙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노동교육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⁷⁾

교육의 기본원칙 관련 참고 입법례

- | |
|--|
| <p>「경제교육지원법」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p> <p>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p> |
| <p>「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p> <p>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p> |

6)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고용노동부는 노동교육이 정치·개인적 편견을 가지고 실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나. 노동교육위원회 설치 등(제정안 제6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임.

노동교육위원회는 ①노동교육의 정책 방향, ②노동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③노동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④노동교육 업무의 협력·조정, ⑤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육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노동계·경영계·학계·노사전문가 중에서 노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제 정 안
제6조(노동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노동교육의 정책 방향 2. 제7조에 따른 노동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3. 제8조에 따른 노동교육 추진성과의 평가 4. 노동교육 업무의 협력·조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노동계, 경영계, 학계, 노사전문가 중에서 노동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은 노동교육의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노동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교육과 관련한 관계 부처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바, 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음.

다만, 제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과 관련한 다른 위원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위원장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공무원인 위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논의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노동교육위원회와 타 교육 관련 위원회 구성 비교 >

구 분	위원장	위원
노동교육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차관	관계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법교육위원회	법무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	관계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환경교육위원회	환경부 차관과 호선된 민간위원	관계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산림청 차장	관계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등

주 : 「통일교육 지원법」은 별도의 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함.

한편, 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⁸⁾이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는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⁹⁾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고용정책심의회의 분

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다. 학교 노동교육(제정안 제6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에 노동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학교 노동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제 정 안
제9조(학교 노동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노동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검토의견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3조¹⁰⁾는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8년부터 실시중인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중학교 사회 및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 ‘근로자의 의미와 보호의 필요성’, 근로자 권리’, ‘노동권 침해구제’, ‘청소년 노동인권’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이를 범교과 학습주제 내용으로 설정하여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배제되어 학교에서의 노동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바,¹¹⁾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여 학교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취지임.

청소년 또는 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10)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매일노동뉴스, “‘노동’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 표류하는 ‘노동인권교육’”, 2022.9.1.

한 채 근로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노동기본권이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결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이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기본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¹²⁾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권한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¹³⁾은 국가교육위원회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통일교육 지원법」의 경우 제정안과 유사하게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정한 사항

1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사회협약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 등의 ‘교육과정’이 아닌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교육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교육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즉, 이를 종합할 때 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와 함께 각 분야별 학교 교육에 대해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현행 교육과정에도 노동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¹⁴⁾되어 있고, 노동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반영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4)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법교과 학습주제로 반영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과(일과 노동의 가치), 경영·금융(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일반사회(노동문제 등 사회문제 탐색), 현대사회와 윤리(노동 가치 존중), 인간과 경제활동(노동인권, 기업가 정신 등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학교교육 관련 참고 입법례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1의2.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및 어린이집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학교 및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그 결과의 보급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하는 해양환경교육의 실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교육지원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라. 사회 및 사업장에서의 노동교육(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사회 노동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제 정 안

제10조(사회 노동교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2. 사회 노동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동교육센터가 실시하는 노동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장에서의 노동교육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므로,¹⁵⁾ 국민 모두는 노동기본권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라 고용노동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동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15)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권리보호 관련 교육' 등 사회 노동교육을 수행하고 있음.¹⁶⁾

제정안은 이에 더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 노동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재 일반 국민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지방노동관서, 근로자이음센터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¹⁷⁾,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교육사업에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회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으로, 현행법 체계 하에서 각종 노동교

16)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 교육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7)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통해 중소기업 종사자 등 대상 단계별·맞춤별 노동교육, 청소년·청년 대상 권리보호교육, 공무원·교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노사관계교육을 정기·수시로 실시 중이고, 지방노동관서, 근로자이음센터, 교육원과 협업하여 노동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 중임.

육사업을 내실을 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법률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며,

인천광역시는 노동분야 업무는 국가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직 및 예산 지원 없이 사회 노동교육업무에 대한 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정안 제10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향후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마. 노동교육센터 지정 등(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연구기관·공공기관·학교·노동교육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을 가지고 인력의 전문성과 시설·장비 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를 노동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교육센터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조(노동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원
2. 노동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노동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5. 그 밖에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노동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노동교육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을 갖출 것
 3.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동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노동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정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동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노동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노동교육센터로 지정하여 노동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직접 교육사업 외에도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등 노동교육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¹⁸⁾을 고려할 때 별도의 노동교육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8)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9.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11.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고 보임.¹⁹⁾

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교육원이 노동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바. 노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제정안 제14조)

1) 제정안의 주요내용

제정안은 노동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받은 노동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9) 이 경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노동교육센터를 운영하도록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한다.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2.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3. 노후준비서비스에 관한 홍보 및 국제협력
4.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보급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사업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중앙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14조(노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① 노동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노동교육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신청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근로자, 사업주, 학생 등을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노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정안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별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동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제정안은 노동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노동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양화·전문화된 노동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동교육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국가로부터 인증된 노동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동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의 품질 유지를 위해 다른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인증의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교육프로그램 인증 관련 참고 입법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②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②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5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②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환경교육프로그램에는 지정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의 처
02)6788-5535

참고

국민 등 대상 의무교육 관련 법률 주요 내용

□ 경제교육지원법(소관: 기재부)

주요내용
□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줄 수 있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하고,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내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함 □ 제4조(국가의 임무)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 기회 제공, 국민 경제에 적합한 경제 교육 내용 마련, 경제교육인력의 체계적 양성 노력 □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장관은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인력 양성 및 활용 등 경제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중립적·효율적으로 추진 □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경제교육정책 수립·조정, 경제교육사업 적정성·중립성,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심의·평가 □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역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지정 - 경제교육인력 연수·활용,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 경제교육 등의 사업 수행

□ 통일교육지원법(소관: 통일부)

주요내용
□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함,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됨 □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통일교육 실시, 전문인력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등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 □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 -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각 부처 및 기관·단체 협조에 관한 사항, 국민의식 제고,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교육센터로 지정 가능 □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장관은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광역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반영 - 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법교육지원법(소관: 법무부)

주요내용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 -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민의 인식 제고,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처우 및 연수,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 포함 □ 제4조(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초·중등·고등교육법 제2조)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 □ 제9조(사회 법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관: 환경부)

주요내용
□ 제4조(책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짐 - 초·중등학교장은 학교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 □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장관은 환경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 -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제6조(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국가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을 수립 □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위원회를 둠 - 국가계획 수립·평가,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등 심의 □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초·중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 - 장관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 및 어린이집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

주요내용
□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 □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 -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 서의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 포함 □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 -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국가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 포함 □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소관: 산림청)

주요내용
□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 □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 립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산림교육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산림교육전문가 육성·지원방안,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산림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포함 □ 제6조(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 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둔 - 종합계획 수립, 산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산림교육프 로그램 인증, 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 □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청장 또는 자치단체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보급하려는 자는 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청장은 필요한 경우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국가·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 산림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